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산불방지 및 진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 나.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지원
- 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2017년 예산에 68백만원 반영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7.19.~8.8.)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완료)
  - 3) 규제심사 : 행정규제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완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개선권고	반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b>이장, 사회단체</b>의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i> <li>⇒ 본 조례안 제5조(산불방지 지원)에 의거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는 이장 및 산불방지 자생단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b>이장, 산불방지 자생단체로 수정.</b></li> </ul> </li> <li>■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호 “산불조심기간”에 대한 정의 삭제 조치.</li> <li>⇒ 본 조례안에서 “산불조심기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li> <li>- 제4호 “산불자생단체”를 “산불방지 자생단체”로 수정.(제5조 제2호도 동일하게 수정)</li> </ul> </li> <li>■ 제3조(적용범위), 제5조(산불방지 보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방지 보조지원’을 ‘<b>산불방지 지원</b>’으로 수정</li> </ul> </li> <li>■ 제6조(보상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를 ‘<b>제5조 제1호</b>’로 수정</li> <li>⇒ 보상금은 제5조 제1호 이장에게만 지원되므로 포함되지 않는 제2호 삭제.</li> </ul> </li> <li>■ 제7조(보조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 제3호’를 ‘<b>제5조 제2호</b>’로 수정.</li> </ul> </li> </ul>	<p>권고안 대로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p>

○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개선권고	반영결과
<p>○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성별특성 반영 해당사항 있으며 개선 사항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이장, 자생단체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이장, 산불자생단체’로 제한하여 명시하고 있음.</li> <li>- 조례(안)에 이와같이 명시하게 되면 이장과 산불자생단체 외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평창군 이장 189명 중 97.4%(184명)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2016년 6월말 현재, 자치행정과 내부자료)에서 성별의 참여를 제한하여 평등의 적극적 형태인 ‘결과의 평등’에 위배될 수 있음.</li> <li>- 결과적으로는 이장과 자생단체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li> <li>- 한편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용어의 정의를 밝히며 ‘산불자생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칫 ‘산불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 자생단체’로 표현을 바꿀 것을 권유함.</li> <li>- 따라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4호, 제5조(산불방지 보조지원)의 규정을 &lt;붙임&gt;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유함.</li> </ul>	<p>권고안 대로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p>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1.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2. 산불방지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산림보호법 [법률 제13138호, 2015.2.3., 일부개정]

###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1]

# 비용 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안 제5조제1호)
- 산불방지 자생단체 보조금(안 제5조제2호)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하여 산불예방·진화활동 지원으로 산불 방지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산불방지 효과 거양

###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합계		68,000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200천원×190명	38,000
산불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1,000천원×30개 단체	30,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군비 예산 편성

## 3. 작성자

작성자	산림과장 김철환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340,000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90,000
	산불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3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34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34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